

조기재취업수당 안내(취업시)

※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직자의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직업에 조기에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로써, 취업하였다고 모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**아래의 지급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는지 심사과정을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**이므로 아래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조건 (취업자의 경우)

1. 대기기간(실업급여 신청일부터 7일)이 지난 후 재취업되어 1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**하루라도 단절 없이** (공휴일 제외) 계속 고용된 근로자(고용보험 이력이 연속되어야 함)
 - 사업주가 변경될 시 기간의 단절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에만 최초 고용일을 기준으로 적용됨
예) 2020.3.31. 이직 → 2020.4.1. 재입사 (계속 고용 O)
2020.3.30. 이직 → 2020.4.1. 재입사 (2020.3.31.에 근로단절이 하루 발생하여 계속 고용 X)
 - ★ 대기기간 중에 재취업한 경우 지급 제외
 - ★ 상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사외이사, 비상임(근) 이사, 감사 등은 조기재취업수당 대상 취업에 비해당
 - ★ 시간 강사로 취업한 경우가 아닐 것(대학시간 강사, 방과 후 교사 등의 경우 계약기간이 12월을 초과하더라도 보수 발생월이 연속하여 12개월이 되지 않으면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지급)
2. 재취업일로부터 수급종료일까지 잔여급여일수가 소정급여일수의 1/2이상 남아 있어야 함
3.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가 아닐 것(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8조 제1항)
 - 관련 사업주 범위 ① 이직전 사업이 합병·분할된 사업의 사업주
② 이직전 사업의 영업을 넘겨받은 사업의 사업주
 - ★ 이직전 사업장과 재취직 사업장간에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도 지급 제외
4.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(취업일 기준)
5.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취업이 약속되어 있지 않을 것
 - ★ 채용통보일이 실업급여 신청일보다 이전인 경우 지급 제외
6. 자영업자 실업급여수급자(자영업 폐업 등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자)가 아닐 것
 - ※ 위 지급조건이 모두 충족 시 재취업한 날부터 **12개월 경과한 다음 날 부터** 3년 이내 청구 가능

필요서류 (서울관악고용센터홈페이지-정보마당-서식자료실에서 다운가능)

1.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
2. 재직증명서 1부(12개월이 지난이후 사업장에서 발급)

지급액 = 구직급여일액 X 잔여급여일수(취업일~수급기간만료일) X 1/2

- 잔여급여일수 기산시점: 근로단절 없이 12개월 동안 계속 고용될 시 최초 입사한 사업장의 재취업일
- ※ 담당자에게 전화하셔도 조기수당이 처리 될 때까지는 금액은 알 수 없으며, 위 지급요건에 의해 지급됨을 알려 드립니다.

청구방법 (방문, 우편, 인터넷)

- 방문접수(대리방문 가능), 등기우편접수, 인터넷접수(www.ei.go.kr), 팩스접수(02-6915-4100)
- ※ 인터넷 접수 시 위 필요서류를 작성 후 스캔 하여 제출(고용보험홈페이지-개인서비스-조기재취업수당)
- ※ 우편접수시 주소: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27(구로동 182-4) 대륭포스트타워3차 2층 관악고용센터
조기재취업수당담당자 앞 (우)08378
- ☎ 02-3282-9369 (조기재취업수당 접수 및 상담 문의)

기타 유의 사항

1. 청구서의 처리 기간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14일(처리기간 산정 시 공휴일 제외 약 20일 소요)
2. 고용보험 취득일이 반드시 입사일과 동일하여야 함(예외: 외국인 등 임의가입자)
3. 수급기간 만료일 이전 퇴사한 경우, 퇴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업급여 청구에 <재실업신고>

